

2016.03.23

## APTA등 일반특혜협정에 대한 원산지확인서 처리 지침 안내

### 1. 제정이유 및 시행일자

#### • 제정이유

관세청은 일반특혜협정(APTA, GSTP, GSP 등)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가 없어 수출자 및 생산자의 원산지증명과 사후검증 시 증빙서류 진위여부에 대한 부담이 있어 이를 완화하고자 일반특혜협정 원산지확인서 권고서식을 제정하여 시행합니다.

원산지확인서 권고서식은 다음 첨부된 내용 확인 바랍니다.

#### • 시행일자 : 16. 3. 16.(수)

# 원산지확인서 권고서식(안)

## 원산지(포괄)확인서(Declaration of Origin)

발급번호(Reference No) :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시를 합니다. (앞쪽)

1. 공급하는 자 (Supplier)	상호(Company Name)	사업자등록번호(Business Number)
	대표자성명(Name of Representative)	전화번호(Tel. No.) 팩스번호(Fax. No.)
	주소(Address) 전자우편주소(E-mail)	인증수출자 인증번호(Customs Authorization No.)
2. 공급받는 자 (Supplied to)	상호(Company Name)	사업자등록번호(Business Number)
	대표자성명(Name of Representative)	전화번호(Tel. No.) 팩스번호(Fax. No.)
	주소(Address) 전자우편주소(E-mail)	

### 공급물품명세서 (Good Statements)

3. 연번 (S/N)	4. 적용대상 협정 (Applicable FTA)	5. 품목번호 (HS 6단위) (HS Code (6-digit))	6. 품명·규격 (Description · Specification of Good(s))	7. 원산지 결정기준 (Origin Criterion)	8. 원산지결정 기준 충족여부 (Fulfillment of Origin Criterion)		9. 원산지 (Country of Origin)	10. 원산지포괄확인기간 (년 월 일 ~ 년 월 일) (Blanket period (YYYY/MM/DD ~ YYYY/MM/DD))
					충족 (Y)	미충족 (N)		
					[ ]	[ ]		
					[ ]	[ ]		
					[ ]	[ ]		
					[ ]	[ ]		

「관세법」 제232조의2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산지를 확인합니다.

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e origin of the good(s)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f Article 236.6 of the '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' .

작성자(Declarer): : (서명 또는 인)(Signature)  
 직위(Position): :  
 상호 및 주소(Company Name/Address) :  
 작성일자(Date): :

작성 방법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번호	기재 항목	기재 내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발급번호	◦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는 자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발급번호를 적습니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	공급하는 자	◦ 물품을 실제로 공급하는 자의 상호, 사업자등록번호, 대표자 성명, 전화 및 팩스 번호, 주소(E-mail 포함)를 적습니다. ◦ 공급하는 자가 인증수출자인 경우, 인증수출자 인증번호를 적습니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	공급받는 자	◦ 원산지확인서의 물품을 공급받는 자의 상호, 사업자등록번호, 대표자 성명, 전화 및 팩스 번호, 주소(E-mail 포함)를 적습니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	연 번	◦ 종류가 다른 물품이 여러 개일 경우 각 종류별로 연번을 적습니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	적용대상 협정	◦ 해당 공급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한 특혜무역협정(Preferential Trade Agreement)의 명칭을 적습니다. (예시) APTA, GSTP, TNDC, GSP 등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	품목번호 (HS 6단위)	◦ 공급물품의 6단위 품목번호를 적습니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	품명·규격	◦ 공급물품의 품명과 규격을 적습니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7	원산지 결정기준	<p>◦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적용된 기준을 아래 표에서 정한 방법으로 적습니다.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원산지결정기준</th> <th colspan="3">기재 방법</th> </tr> <tr> <th>협정명</th> <th>기재 방법</th> <th>비고(예시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5">가. 완전생산 물품</td> <td>APTA</td> <td>A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TNDC</td> <td>P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GSTP</td> <td>A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GSP</td> <td>A 또는 P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최빈국</td> <td>A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5">나. 세번변경기준</td> <td>APTA</td> <td>-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TNDC</td> <td>X</td> <td>"X" 97.06(수출품의 HS 4단위)</td> </tr> <tr> <td>GSTP</td> <td>-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GSP</td> <td>W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최빈국</td> <td>-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5">다. 부가가치기준</td> <td>APTA</td> <td>B</td> <td>"B" 50%(비원산지·원산지미상 재료 비율)</td> </tr> <tr> <td>TNDC</td> <td>Y</td> <td>"Y" less than 50%(비원산지·원산지미상 재료 비율)</td> </tr> <tr> <td>GSTP</td> <td>B</td> <td>"B" 50%(비원산지·원산지미상 재료 비율)</td> </tr> <tr> <td>GSP</td> <td>B 또는 Y</td> <td>"B" 50%(비원산지·원산지미상 재료 비율)</td> </tr> <tr> <td>최빈국</td> <td>B</td> <td>"B" 40%(비원산지·원산지미상 재료 비율)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5">라. 누적부가가치기준</td> <td>APTA</td> <td>C</td> <td>"C" 60%(수출참가들의 총 원산지 재료 비율)</td> </tr> <tr> <td>TNDC</td> <td>-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GSTP</td> <td>C</td> <td>"C" 60%(수출국산 원자재 총가치 비율)</td> </tr> <tr> <td>GSP</td> <td>C</td> <td>"C" 60%(역내 부가가치 비율)</td> </tr> <tr> <td>최빈국</td> <td>-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5">마. 특별 원산지기준</td> <td>APTA</td> <td>D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TNDC</td> <td></td> <td>2개의 원산지기준 충족시 "X" 84.05, "Y" less than 40%</td> </tr> <tr> <td>GSTP</td> <td>D</td> <td>최빈국특혜비율을 충족하는 생산품</td> </tr> <tr> <td>GSP</td> <td>D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최빈국</td> <td>-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원산지결정기준	기재 방법			협정명	기재 방법	비고(예시)	가. 완전생산 물품	APTA	A		TNDC	P		GSTP	A		GSP	A 또는 P		최빈국	A		나. 세번변경기준	APTA	-		TNDC	X	"X" 97.06(수출품의 HS 4단위)	GSTP	-		GSP	W		최빈국	-		다. 부가가치기준	APTA	B	"B" 50%(비원산지·원산지미상 재료 비율)	TNDC	Y	"Y" less than 50%(비원산지·원산지미상 재료 비율)	GSTP	B	"B" 50%(비원산지·원산지미상 재료 비율)	GSP	B 또는 Y	"B" 50%(비원산지·원산지미상 재료 비율)	최빈국	B	"B" 40%(비원산지·원산지미상 재료 비율)	라. 누적부가가치기준	APTA	C	"C" 60%(수출참가들의 총 원산지 재료 비율)	TNDC	-		GSTP	C	"C" 60%(수출국산 원자재 총가치 비율)	GSP	C	"C" 60%(역내 부가가치 비율)	최빈국	-		마. 특별 원산지기준	APTA	D		TNDC		2개의 원산지기준 충족시 "X" 84.05, "Y" less than 40%	GSTP	D	최빈국특혜비율을 충족하는 생산품	GSP	D		최빈국	-	
원산지결정기준	기재 방법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협정명	기재 방법	비고(예시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가. 완전생산 물품	APTA	A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TNDC	P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GSTP	A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GSP	A 또는 P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최빈국	A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나. 세번변경기준	APTA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TNDC	X	"X" 97.06(수출품의 HS 4단위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GSTP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GSP	W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최빈국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다. 부가가치기준	APTA	B	"B" 50%(비원산지·원산지미상 재료 비율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TNDC	Y	"Y" less than 50%(비원산지·원산지미상 재료 비율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GSTP	B	"B" 50%(비원산지·원산지미상 재료 비율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GSP	B 또는 Y	"B" 50%(비원산지·원산지미상 재료 비율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최빈국	B	"B" 40%(비원산지·원산지미상 재료 비율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라. 누적부가가치기준	APTA	C	"C" 60%(수출참가들의 총 원산지 재료 비율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TNDC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GSTP	C	"C" 60%(수출국산 원자재 총가치 비율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GSP	C	"C" 60%(역내 부가가치 비율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최빈국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마. 특별 원산지기준	APTA	D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TNDC		2개의 원산지기준 충족시 "X" 84.05, "Y" less than 4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GSTP	D	최빈국특혜비율을 충족하는 생산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GSP	D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최빈국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8	원산지결정 기준 충족여부	◦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표시합니다. (예시) 원산지인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"[√] 충족"에 표시합니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9	원산지	◦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"KR" 또는 "한국"으로 적습니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0	원산지포괄 확인기간	◦ 물품공급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반복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그 반복 사용기간을 적습니다. (예시) 2012.12.01 - 2013.11.30 ※ 원산지포괄확인기간을 적지 아니한 때에는 단수원산지확인서로 봅니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